

신탁계약 변경 내역서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ING 1억만들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 1호(채권혼합)
2. 신탁계약 변경 시행일 : 정정신고서 효력발생일
3. 신탁계약 변경 내용 : 이익분배 방법 및 공시 및 보고서 교부방법 변경 등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33조(이익분배)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 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.	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 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부칙		(시행일) 이 변경된 신탁계약은 2010년 3월 9일 체결하고,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

신탁계약 변경 내역서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ING 타이완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2. 신탁계약 변경 시행일 : 정정신고서 효력발생일
3. 신탁계약 변경 내용 : 이익분배 방법 및 공시 및 보고서 교부방법 변경 등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33조(이익분배)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 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.	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 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부칙		(시행일) 이 변경된 신탁계약은 2010년 3월 9일 체결하고,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

신탁계약 변경 내역서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ING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 1호(주식)
2. 신탁계약 변경 시행일 : 정정신고서 효력발생일
3. 신탁계약 변경 내용 : 이익분배 방법 및 공시 및 보고서 교부방법 변경 등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33조(이익분배)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 시 분배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<u>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 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.	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 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u>
부칙		<u>(시행일) 이 변경된 신탁계약은 2010년 3월 9일 체결하고,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</u>